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2949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장동춘

변론 종결 2021. 2. 4

판결 선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와 미국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미국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 6. 5. 접수 제53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D(주)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12. 4. E[이민 후 미국인 C, 이하 이라 한다]을 상대로 'C 등은 연대하여 파산자 D(주)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① 5, 579, 999, 398원 및 그중 3, 008, 396, 472원에 대하여, ②미합중국 통화4,700,796.18달러 및 그 중 3,233,890.89달러에 대하여 각 200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3가단 16013).

2) 원고는 위 판결상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7. 12. 4. C을 상대로 시효중 단을 위하여 위 판결상 채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18 . 8. 22. 'C 등은 F, G,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 877, 851, 284원 및 위 돈중 3,695,805,003원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하509586, 이하 위 판결상 채권 중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피고와 C은 2020. 6.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C은 2020 . 6. 5. 피고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제주지방법원 2020. 6. 5. 접수 제53074호,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C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채권인 158억 원이상이 있었음에 반하여 그에 상응할 만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

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내지 9호증,을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의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감소하게 하였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C의 사해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선의 항변

피고는 '비록 C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고가 C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 주었으나피고는 C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피고는 C에게 지급한돈을 변제를 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선의 항변을 하나,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선의 취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공성 봉

별지